참고 분할의 유형 ‣ 단순분할 -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(존속분할) 분할법인 甲 ────→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-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(소멸분할) 분할법인 甲 ────→ 분할신설법인 乙 분할신설법인 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(분할후 갑법인 소멸) ‣ 분할합병 -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(흡수분할합병) 분할법인 甲 ────→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'사업 -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(소멸분할합병) 분할법인 甲 ─→ 분할신설법인 丙 ←─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'사업 B'사업 (분할후 을법인 소멸) - 분할법인이 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(분할합병)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丙 분할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'사업 B'사업 C사업